수 영 구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수 영 구 보

호외 제709호 2023. 6. 1.(목)

조 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3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3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0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4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51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5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59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63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6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72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79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8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9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94

규 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0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107

고 시

○2023년 시행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125
○2023년 시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126

회람								

· 발행 : 수 영 구 · 편집 : 기획전략과 (610-407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따른”을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독서문화 진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강좌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행사
3. 구민독후감 공모
4.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상품권, 기념품, 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 이용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자”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설사용자”를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으로, “변상하게”를 “변상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도서관내”를 “도서관 내”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 법」 제30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사서직 선임직원으로 임명한다”를 “간사는 사서직 선임직원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독서문화 진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강좌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행사 3. 구민독후감 공모 4.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상품권, 기념품, 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이용) ---------- 등 이용에 ----------.
제5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 구청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생 략)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 사용허가를 받은 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 (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실·분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실·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 변상하여야 ----------.
제13조 (위탁자료) ① (생 략)	제13조(위탁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도서관 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 법」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사서직 선임직원으로 임명한다.	⑧ ---------- 간사는사서직 선임직원이 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원내용을 마련하여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제2조, 제15조)

나.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원내용 신설 (제3조의2)

다. 약칭 사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를 따른다.

제4조 중 “구청장에게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는 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을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여비 부정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를 따른다.
제4조 (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에게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에게는 영 ----------.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행자의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정산 및 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

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6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 제안이유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부패 예방을 위하여 출장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 변경 (제3조)

나.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사항 정비 (제5조)

다. 부패 예방을 위한 출장여비 부정수령자 가산금 징수 근거 신설 (제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4조, 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만 3세부터”를 “3세부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의 감면 비율란 100분의 30의 감면 사유별란 중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감면 비율란 100분의 10의 감면 사유별란 중 “만 12세 이상 만 54세 이하”를 “12세 이상 54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
가. 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가. --- 3세부터 ----------
나. 어린이: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나. ----- 7세 이상 12세 이하----------
다.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다. ----- 13세 이상 18세 이하----------
라. 성인: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	라. --- 19세 이상 64세 이하----------
마. 노인: 만 65세 이상의 사람	마. --- 65세 이상----------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10조 관련)

감면 비율	감면 사유별	비고
이용료 전부	(생략)	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	(생략)	
100분의 30	만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생략)	
	(생략)	
100분의 15	(생략)	
100분의 10	(생략)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상 만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생략)	
100분의 5	(생략)	
100분의 20 이하	(생략)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10조 관련)

감면 비율	감면 사유별	비고
이용료 전부	(현행과 같음)	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	(현행과 같음)	
100분의 30	65세 이상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분의 15	(현행과 같음)	
100분의 10	(현행과 같음)	
	---------- 12세 이상 54세 이하----------	
	(현행과 같음)	
100분의 5	(현행과 같음)	
100분의 20 이하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용자 나이 규정의 “만” 표시 삭제 (제3조제1호)

나. 이용료 감면 기준 중 나이 규정의 “만” 표시 삭제 (별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증명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대 상 사 무	금 액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5.「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90,000원
6.「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7.「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5,000원
8.「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0.「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3.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	1건당 1,000원
14. 그 밖에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안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119종의 민원증명 중 수수료가 무료인 장애인 증명서 등 73종 이외에 주민등록 등본 등 45종 민원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증명 간 수수료의 형평성 반영 등 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는 민원증명의 수수료 면제사항 규정 신설 (제5조제2항)

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는 민원증명의 수수료 사항 삭제 (별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생계지원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제5조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제1호”로, “순위에 관하여”를 “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참전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을 “제4조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으로, “매월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국가보훈부----------.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2.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생계지원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생 략)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② 제4조제1호---------- 순위----------.

③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참전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④ 제4조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 지급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대상을 확대 지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제4조제2호)

나. 지원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개선 보완 (제5조제4항, 제5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공포, 2023. 6. 5. 시행)에 따른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 반영 (제2조, 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든 구민”을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보훈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만원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생계지원을 위한 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그 밖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국가보훈 기본법」 ----------. 2.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부장관 ----------.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나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 설>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 1. ~ 6. (현행과 같음) 7. ----------구청장----------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보훈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만원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생계지원을 위한 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그 밖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안이유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 신설 및 지급 대상자 규정 (제5조제1항)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제3항, 제4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공포, 2023. 6. 5. 시행)에 따른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 반영 (제2조~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시행일 현재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5조(독립유공자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그 밖에 독립유공자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제3조～제4조)

다. 독립유공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

라.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공포, 2023. 6. 5. 시행)에 따른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 반영 (제2조, 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2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2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다.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제6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65세 이상”를 “65세 이상”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사장에게”를 “공단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사장”을 “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
1. 만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1. 65세 이상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 유무를 지사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② ---------- 공단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생 략)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를 매월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한다.	② ---------- 공단----------.

◆ 제안이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기준이 되는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제3조제1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명 변경 (제4조～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만 18세 이하”를 “18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이용료등의 납부·감면 등)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자녀가정(만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세자녀 이상 되는 가정을 말한다)의 장애인: 100분의 50 감경 3. (생 략) ④ (생 략)	제5조(이용료등의 납부·감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18세 이하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용료등의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정 “만” 나이 정비 (제5조제3항제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2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증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 제안이유

공공시설 등에 생리대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민의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32조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및 필요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라.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 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
라. 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
마. 환수 조치 등 (제7조)
바. 업무의 위탁 (제8조)
사. 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6조(판로 확대)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
라. 활성화 지원 등 (제5조)
마. 판로 확대 (제6조)
바. 포상 (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괴롭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
라.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의 신청 (제5조,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
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 제9조)
사.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
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괴롭힘 실태조사 (제11조, 제12조)
자. 비밀 엄수의 의무 (제13조)
차. 허위신고 (제1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②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제4조)
라.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제5조)
마. 정보의 보호 (제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구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각 호의 심의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 ⑤ (생 략)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제3조의2)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제3조의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명”을 “10명”으로 한다.

제5조 중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을 “검사위원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회계관련”을 “회계, 세무관련”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위원의 정수)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10명 ---------- .
제5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 ----------검사위원은 다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이나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회계, 세무관련---- 3년 ----------
제9조(실비보상) ① (생 략)	제9조(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일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② ---------- 150,000원-------.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1. 타 시·도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할 때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일비를 현실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나.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검사위원 거주지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개정 (제2조)

나. 검사위원 거주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제5조, 제11조)

다. 검사위원 실비보상 일비 현실화 (제9조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괴롭힘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나. 의장의 책무 (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
라.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의 신청 (제5조,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
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 제9조)
사.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
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괴롭힘 실태조사 (제11조, 제12조)
자. 비밀 엄수의 의무 (제13조)
차. 허위신고 (제1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부분장사무표 중 행정지원과 분장사무란의 제102호, 제10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9호,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02. 정보시스템 재해복구(백업) 체계 관리

103.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성과관리

11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12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같은 표 중 가족행복과 분장사무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중 기초생활보장과 분장사무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활기금 관리

같은 표 중 환경위생과 분장사무란의 제56호,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6.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7.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같은 표 중 교통행정과 분장사무란의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호를 삭제한다.

1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보건행정과 분장사무란의 제4호,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9호를 삭제한다.

4. 한센병, 성매개감염병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9. 결핵ㆍ성매개감염병ㆍ기생충 검사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건강증진과 분장사무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연ㆍ절주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세부분장사무표	【별표 2】 세부분장사무표

부서별	분 장 사 무
행 정 문화국 행 정 지원과	1.~101. (생 략) 102. 전산자료 및 백업시스템관리, 자료소산 103. 정보화 사업 협의조정,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 104.~118. (생 략) <신 설> <신 설>

부서별	분 장 사 무
행 정 문화국 행 정 지원과	1.~101. (현행과 같음) 102. 정보시스템 재해복구(백업) 체계 관리 103.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성과관리 104.~118. (현행과 같음) 11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12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부서별	분 장 사 무
복 지 환경국 가 족 행복과	1.~3. (생 략) 4.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의 적립, 운용관리 5.~31. (생 략)

부서별	분 장 사 무
복 지 환경국 가 족 행복과	1.~3. (현행과 같음) <삭 제> 5.~31. (현행과 같음)

부서별	분 장 사 무
복 지 환경국 기 초 생 활 보장과	1.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의 적립, 운용관리 2.~20. (생 략)

부서별	분 장 사 무
복 지 환경국 기 초 생 활 보장과	1. 자활기금 관리 2.~20. (현행과 같음)

부서별	분 장 사 무
복 지 환경국 환 경 위생과	1.~55. (생 략) <신 설> <신 설>

부서별	분 장 사 무
복 지 환경국 환 경 위생과	1.~55. (현행과 같음) 56.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7.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부서별	분 장 사 무
안 전 도시국 교 통 행정과	1.~18. (생 략) 19. 창고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20.~32. (생 략) 33. 활어차량 해수흘림 행위 지도에 관한 사항 34.~38. (생 략)

부서별	분 장 사 무
안 전 도시국 교 통 행정과	1.~18. (현행과 같음) 1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 20.~32. (현행과 같음) <삭 제> 34.~38. (현행과 같음)

부서별	분 장 사 무
보건소 보 건 행정과	1.~3. (생 략) 4. 한센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28. (생 략) 29. 결핵·성병·기생충 검사에 관한 사항 30.~38. (생 략) 39. 의료법인에 관한 사항 40.~45. (생 략)

부서별	분 장 사 무
보건소 보 건 행정과	1.~3. (현행과 같음) 4. 한센병, 성매개감염병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28. (현행과 같음) 29. 결핵·성매개감염병·기생충 검사에 관한 사항 30.~38. (현행과 같음) <삭 제> 40.~45. (현행과 같음)

부서별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 강 증진과	1. (생 략) 2.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3.~35. (생 략)

부서별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 강 증진과	1. (현행과 같음) 2. 금연·절주사업 3.~35.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사무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설사무 분장 및 분장사무의 명확화·현행화 (별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본청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 중 공통사항, 일자리경제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세무1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보건소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 중 보건소 공통사항,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4 동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구 본청 공통사항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공무직근로자 관리	1. (현행과 같음)						
	2. 정원책정 및 결원보충 요구	★		○			
	3.~4. (현행과 같음)						
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일자리경제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6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5. 수영구 어린이 워터파크 운영	1. 워터파크 운영 계획	★			○		
	2. 워터파크 시설 관리	★		○			

- 행정지원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7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1. 정보화업무	1. (현행과 같음)						
	2. 정보시스템 재해복구(백업) 체계 관리	★		○			
	3. (현행과 같음)						
	4.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			
	5.~6. (현행과 같음)						
	7.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계획	★			○		
	8.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운영	★		○			
72.~7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1.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			○		
	2.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			
	3. 공공데이터 정비・개방・제공에 관한 사항	★		○			
8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1.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	★			○		
	2. 데이터 관리・활용・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			

- 문화관광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2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7. <삭 제>	1.~5. <삭 제>						
28.~2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세무1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부과에 관한 사무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 고지분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가. 결의서 1건당 1,000만원 초과	★			○		
	나. 결의서 1건당 1,000만원 이하	★		○			
	3. (현행과 같음)						
10.~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가족행복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노인복지	1.~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15.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복지	1.~15. (현행과 같음)						
	16. <삭 제>						
	17.~18. (현행과 같음)						
4.~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자활기금 관리	1. 자활기금 관리·운영	★			○		
	2. (현행과 같음)						
7.~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환경위생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식품위생업소행정	1.~7. (현행과 같음)						
	8.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단란·유흥주점업, 공유주방업 등						
	가.~마. (현행과 같음)						
	9.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가.~마. (현행과 같음)						
	1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가.~마.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5.~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환경보전지도감독	1.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종합계획		★		○		
	- (현행과 같음)						
	2.~26. (현행과 같음)						
14.~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관리 및 시정명령	★		○			
	2. 공공기관 충전시설 개방현황 관리	★		○			
	3.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민원처리(상담민원 등)	★		○			
	4.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부과·징수	★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발급	○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	1.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18.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1. 신고 및 관리	★		○			
	2. 보고 및 검사 등	★		○			
	3. 과태료 부과·징수	★		○			

- 안전관리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9. 중대재해 관리	1.~4. (현행과 같음)						
	5.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및 산업보건의 선임	★				○	
	6.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	
	7. 사업장(시설)별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		
	8. 사업장(시설)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			○		
	9.~10. (현행과 같음)						

- 교통행정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주차장 관리	1.~6. (현행과 같음)						
	7. <삭 제>						
	8. (현행과 같음)						
3.~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리	1.~11. (현행과 같음)						
	12. 주민신고제 민원처리	★	○				
9.~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6. <삭 제>	1. <삭 제>						
27.~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9.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 (현행과 같음)						
	2. 부설주차장(건축) 협의	★	○				
	3.~4. (현행과 같음)						
30.~3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3. 자동차관리	1.~4. (현행과 같음)						
	5. 결격사유 조회	★	○				
	6. 불법정비 자동차 점검, 임시검사 명령 및 새올 상담민원 처리	★	○				
	7. (현행과 같음)						
	8. 자동차관련 특별사법경찰업무 (사건송치, 범칙금 부과 징수)	★		○			
	9.~10. (현행과 같음)						
	11. 불법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		○			
	12.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		○			
34.~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7. 교통행정 일반	1.~6. (현행과 같음)						
	7. 교통문화행정	★		○			

- 도시관리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도로정비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가로환경정비 순찰(도로무단 적치물, 노점상 단속)	★		○			
	6. <삭 제>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삭 제>						
2. <삭 제>	1.~3. <삭 제>						
3.~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옥외광고물 관리	1.~7. (현행과 같음)						
	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공	통	사	항	참	조
	9.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운영	★			○		
7.~2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0. <삭 제>	1.~2. <삭 제>						
31. <삭 제>	1.~8. <삭 제>						
32. <삭 제>	1.~2. <삭 제>						
33. 해변 관리	1. 해변 운영계획 수립		★				○
	2. 해변 사장 점용허가	★		○			
	3. 공영파라솔・샤워장 운영	★			○		
	4. 행정봉사실 운영	★			○		
	5. 그 밖의 해변 관리에 관한 사항	★			○		

- 건축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건축선 지정	1.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				○	
10.~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6.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1.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주민 합의체구성(변경)신고	★		○			
	2. 사업시행계획 인가	★			○		
	3.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		○			
	4. 준공인가	★		○			
	5. 감독일반	★		○			
	6. 정비사업에 관한 일반행정	★		○			

- 건설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1.~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	1.~3. (현행과 같음)						
12.~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9. 도로정비	1.~7. (현행과 같음)						
	8. 측구준설 및 잔토제거	★		○			
	9. 가로환경정비 순찰	★		○			
	10. 그 밖의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		○			
	11. 도로보수원 채용	공	통	사	항	참	조
	12. 도로보수원 공상 처리	공	통	사	항	참	조
30.~3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2. 하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1. (현행과 같음)						
	2. 배수설비 설치 인·허가						
	가. 일일 오수발생량 100㎥이상	★		○			
	나. 일일 오수발생량 100㎥미만	★	○				
	3.~4. (현행과 같음)						
33.~3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5. 환경순찰 및 예방 관리	1. 환경순찰 계획 수립 및 평가	★			○		
	2. 구정저해요인 사전예방 및 개선 대책 수립	★				○	
	3. 환경순찰 결과 처리						
	가. 중요사항	★			○		
	나. 경미사항	★		○			

[별표 2]

- 보건소 공통사항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1. 일반업무	1.~16. (현행과 같음)						
	17. 일지 및 각종일보 처리	★	○				
	18.~25.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차량관리	1. 차량 정수배정 요청	★		○			
	2. 차량 구입(처분) 사항	★		○			
	3. 차량점검 및 유류수불	★	○				
6. 의료 및 검사 장비 관리	1. 장비 관리계획	★			○		
	2. 장비 구입(처분) 사항	★		○			
	3. 장비점검 및 비품수불	★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공무직근로자 관리	1. (현행과 같음)						
	2. 정원책정 및 결원보충 요구	★		○			
	3.~4.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보건행정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1.~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삭 제>	1.~3. <삭 제>						
13.~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4. 각종 병리검사 및 검진	1.~3. (현행과 같음)						
	4. 성매개감염병관리	★		○			
25.~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건강증진과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구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1. 건강증진사업	1.~5. (현행과 같음)						
	6.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		○			
	7.~8. (현행과 같음)						
2.~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방문건강관리사업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		
	2.~5. (현행과 같음)						
9. 국가암관리사업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		
	2.~4. (현행과 같음)						
	5. 사업실적보고	★		○			
10. 마을건강센터사업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		
	2. 사업실적보고	★		○			
	3.~4. (현행과 같음)						
11.~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치매관리사업	1.~2. (현행과 같음)						
	3.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		
	4.~7. (현행과 같음)						
	8. 사업운영 및 실적보고	★		○			
	9.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	★		○			
	10. (현행과 같음)						
	11. 치매안심센터 청사 및 소모품 관리	★	○				
15.~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4]

- 동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담당자	사무장	동장
1.~2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7.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	1. 주차단위구획 접수 및 배정	★		○
	2. 주차요금 부과·징수 및 반환	★		○
	3. 부정주차 차량 단속·견인 및 주차요금 산정	★		○
	4. 위탁 관리단체 추천	★		○

◆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신설·조정되는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정비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규사무 반영, 용어 정비, 전결권 조정 등 (별표 1, 별표 2, 별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48호

2023년 시행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2023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Ⅰ.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① 용도지수
      ② 층 지수
      ③ 가감산율
   나.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①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③ 적용지수
      ④ 경과연수별 잔가율
      ⑤ 가감산특례
      ⑥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⑦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⑧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 요령
2. 세부결정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세무2과에 비치된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도 확인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49호

2023년 시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2023년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차량 : 103건

○ 기준가격 조정 (53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현행 기준가격	변경 기준가격
1	3. 화물자동차 3-3. 친환경분류 가. 국산	화물	기아	봉고III 1톤 EV	PUEVJZNF C-G7A	39,690	36,630
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CADILLAC	Escalade	S48KL	155,420	132,620
3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CADILLAC	Escalade ESV	S48KL	155,420	142,990
4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이륜	HONDA	CMX500A	PC56	8,450	7,510
5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가. 국산	승용	엘앰	엘앰카니발 하이리무진	LM-CH-DIE	74,630	56,500
6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가. 국산	승용	엘앰	엘앰카니발 하이리무진	LM-CH-GAS	75,490	54,720
7	1. 승용자동차 1-3. 친환경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LESTAR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VSEG	56,750	47,490
8	1. 승용자동차 1-3. 친환경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LESTAR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VSED	49,570	49,570
9	1. 승용자동차 1-3. 친환경분류 나. 외국산	승용	CHEVROLE T	Bolt EV	F76E0	44,400	38,250
10	3. 화물자동차 3-3. 친환경분류 나. 외국산	화물	제인모터스	제인모터스칼마토EV1톤내장탑차	C-90	55,250	33,330
11	1. 승용자동차 1-3. 친환경분류 나. 외국산	승용	AUDI	Q7 45 TDI Quattro	4M	100,860	85,470

구분	분류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현행 기준가격	변경 기준가격
1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가. 국산	승용	현대	캐스퍼	AX15CAB-S5-G3A	16,260	14,200
13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가. 국산	승용	현대	아반떼	CN74EEC-R6-G3A	22,880	21,720
14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가. 국산	승용	현대	아반떼	CN74EEC-M7-G3A	22,100	18,500
15	1. 승용자동차 1-3. 친환경분류 가. 국산	승용	현대	넥쏘수소전기차	FE86FF-9-S-G7A	64,210	61,270
16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FORD	Explorer 2.3L	U625-H-AWD	53,810	51,990
17	1. 승용자동차 1-3. 친환경분류 나. 외국산	승용	MERCEDES-BENZ	S450 4MATIC	223161	157,700	153,640
18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ROLLS-ROYCE	Cullinan	TV41	451,810	405,040
19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ROLLS-ROYCE	Rolls-Royce Ghost Black Badge	TD61	573,660	479,310
20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BMW	X3 xDrive20i	31DP	59,070	56,740
21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가. 국산	승용	현대	아반떼	CN74EEC-M6-G3A	20,590	18,500
2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가. 국산	승용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CN74JGC-M6-G5A	23,580	22,270
23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가. 국산	화물	현대	마이티	QT2.5CP-22 MLM-FaA6	51,280	47,270
24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가. 국산	화물	현대	마이티	QT2.5CP-23 MLM-FaA6	52,470	48,410
25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FORD	Lincoln Corsair 2.0	CX483-9-AWD	50,520	42,724
26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FORD	Explorer 3.0	U625-C-AWD	58,570	52,458
27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BMW	X4 xDrive20d	31CA	65,540	62,636
28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BMW	X4 xDrive20i	21DT	60,610	55,363
29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BMW	BMW 520i	11BH	53,240	49,985
30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BMW	X3 M40i	81DP	81,180	75,181
31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BMW	X3 xDrive20d	11BZ	63,040	59,818
3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BMW	BMW 630i xDrive	61CC	76,170	74,000
33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MERCEDES-BENZ	S580 4MATIC	223176	199,640	184,378
34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MERCEDES-BENZ	GLS580 4MATIC	167986	148,610	141,505
35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MERCEDES-BENZ	S500 4MATIC	223163	171,050	156,561

구분	분류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현행 기준가격	변경 기준가격
36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MERCEDE S-BENZ	GLS400d 4MATIC	167923	120,240	115,900
37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MERCEDE S-BENZ	GLE400d 4MATIC Coupe	167323	107,090	104,732
38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MERCEDE S-BENZ	AMG GT43 4MATIC+	290659	123,690	120,285
39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MERCEDE S-BENZ	S400d 4MATIC	223033	138,040	134,100
40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AUDI	A8 L 55 TFSI quattro	F8	123,130	113,774
41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AUDI	A6 40 TDI	F2	56,810	49,767
4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VOLVO	XC90 B6 AWD	LF06	82,190	68,028
43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VOLVO	V90CC B5 AWD	PZL1	66,190	54,866
44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VOLVO	S90 B5	PTL1	59,920	49,649
45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VOLVO	V60CC B5 AWD	ZZL1	52,700	44,056
46	4. 이륜자동차 4-3. 친환경분류 가. 국산	이륜	시티플라이	C40A	C-7240A	5,640	3,190
47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가. 국산	승용	디에이치오토	디에이치오토카니발하이리무진	KA4-LUNE-GS	75,200	45,000
48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4S	Y1A	166,080	134,460
49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718 Bosxter	982	91,500	83,160
50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718 Cayman	982	82,750	79,100
51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718 Boxster S	982	100,360	93,440
5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718 Cayman S	982	96,200	89,380
53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Cayenne	9YA	117,000	101,210

○ 신규 (38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현행 기준가격	변경 기준가격
1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이륜	HONDA	NT1100D	SC84	-	16,750
2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이륜	HONDA	NBC110MCF	JA56	-	2,280
3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이륜	YAMAHA	GPD155A	SG65	-	4,180
4	4. 이륜자동차 4-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이륜	HAOJUE	HJ125T-31	LC6	-	2,580

구분	분류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현행 기준가격	변경 기준가격
5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Y1A	-	112,180
6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Turbo	Y1A	-	181,190
7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Turbo S	Y1A	-	213,660
8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Cross Turismo 4	Y1A	-	124,450
9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Cross Turismo 4S	Y1A	-	139,650
10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Cross Turismo Turbo	Y1A	-	183,260
11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GTS	Y1A	-	161,930
1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718 Boxster GTS 4.0	982	-	116,850
13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718 Cayman GTS 4.0	982	-	112,700
14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718 Cayman GT4	982	-	119,780
15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Panamera 4 Executive	971	-	137,140
16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Panamera Turbo S	971	-	266,080
17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Panamera Turbo S E-Hybrid	971	-	274,460
18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Cayenne Coupe	9YA	-	108,990
19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Cayenne E-Hybrid	9YA	-	110,200
20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Cayenne E-Hybrid Coupe	9YA	-	115,380
21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Cayenne Turbo	9YA	-	155,620
2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Cayenne Turbo Coupe	9YA	-	167,020
23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Cayenne Turbo GT	9YA	-	213,140
24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Macan GTS	95B	-	109,680
25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Carrera	992	-	147,760
26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Carrera 4	992	-	155,710
27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Carrera Cabriolet	992	-	161,500

구분	분류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현행 기준가격	변경 기준가격
28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Carrera 4 Cabriolet	992	-	169,440
29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Targa 4	992	-	169,440
30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Carrera 4S Cabriolet	992	-	183,860
31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Targa 4S	992	-	184,380
3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Turbo S	992	-	268,070
33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Turbo S Cabriolet	992	-	281,540
34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Carrera 4 GTS	992	-	195,260
35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Carrera GTS	992	-	187,320
36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Carrera GTS Cabriolet	992	-	200,960
37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Targa 4 GTS	992	-	208,910
38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911 GT3	992	-	217,290

○ 삭제 (12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현행 기준가격	변경 기준가격
1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ROLLS-ROYCE	Cullinan	TV410	496,530	
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ROLLS-ROYCE	Phantom	TT610	445,450	
3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ROLLS-ROYCE	Phantom EWB	TT810	721,640	
4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MERCEDES-BENZ	GLC43 AMG 4Matic	253964	86,450	
5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4S	Y1A-4S-H-4-20	164,760	-
6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4S	Y1A-4S-H-4-21	169,410	-
7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4S	Y1A-4S-H-5-20	165,460	-
8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4S	Y1A-4S-H-5-21	170,070	-
9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4S	Y1A-4S-L-4-20	151,000	-
10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4S	Y1A-4S-L-4-21	162,890	-

구분	분류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현행 기준가격	변경 기준가격
11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4S	Y1A-4S-L-5-20	154,870	-
12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나. 외국산	승용	PORSCHE	Taycan 4S	Y1A-4S-L-5-21	164,360	-

□ 기계장비 : 2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산지구분	제작회사	기종명	현행 기준가격	변경 기준가격
신규	4. 지게차	국산	두산산업차량	D45SE-9	-	51,930
신규	4. 지게차	국산	두산산업차량	D70EV-9	-	74,450

□ 항공기 : 1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제작회사	변경 전 형식	변경 후 형식	정원	최대이륙 중량(kg)	내용연수	현행 기준가격
변경	고정익	GULFSTREAM	GIV	GVI	13	46,992	12	66,937,000

□ 에너지공급시설 : 44건

(단위 : 천원)

구분	제작사	모델명	용량	형식(동시충전)	기준가격
삭제	시그넷이브이	HFC200K-NCM2	100kW/채널	2	31,550
신규	보타리에너지	EVon50-2CR	50	2	15,314
신규	보타리에너지	EVon50-3CR	50	3	16,625
신규	보타리에너지	Evon100-2CR	100	2	23,655
신규	보타리에너지	Evon7-BC	7	1	2,565
신규	씨어스	CS500A2BC04W	7	1	3,230
신규	씨어스	Cus-200A	7	1	3,610
신규	씨어스	CS200A3CC04C	14	2	4,275
신규	씨어스	CS600A4AC01C	14	4	15,960
신규	씨어스	CF200M	100	1	25,650
신규	블루네트웍스	ECU-L7002S	7	1	2,821
신규	블루네트웍스	ECU-M5001	50	1	15,466
신규	블루네트웍스	ECU-M5002	50	2	15,675
신규	블루네트웍스	ECU-H1002S	100	2	26,125

구분	제작사	모델명	용량	형식(동시충전)	기준가격
신규	현대이브이씨	HD-750A4AC	14	4	16,007
신규	이카플러그	GCPX14B	7	1	2,612
신규	이카플러그	GCPX24B	14	2	3,135
신규	이카플러그	GEPX50C	50	2	15,361
신규	이카플러그	GEPX100C	100	2	23,702
신규	중앙제어	JC-9932-100-821	100	2	26,125
신규	태성콘텍	TSCT-2007C	7	1	2,755
신규	태성콘텍	TSCT-2007A	7	1	3,553
신규	태성콘텍	TSCT-3050A	50	3	17,765
신규	태성콘텍	TSCT-1100A	100	1	25,650
신규	광성계측기	KVS-100D01	100	2	25,650
신규	한국알박	UK20GV-NC7W	7	1	3,553
신규	한국알박	UK-GV100D-DC	100	2	27,455
신규	투이스이브이씨	SSEVC20S-BCCI14KW	14	2	2,956
신규	피앤이시스템즈	EVC 007D	14	2	3,135
신규	피앤이시스템즈	KEP-1SI-100	100	1	20,900
신규	피앤이시스템즈	EVQ20-2D-200-A	200	2	36,575
신규	남부산전	NB10078HM (NB10078CB)	7	1	3,762
신규	남부산전	NB7K08CB	7	1	3,762
신규	남부산전	NB50K08C1T1	50	1	18,810
신규	남부산전	NB50K12C3T3	50	1	20,691
신규	남부산전	NB100K12C1T1	100	1	32,395
신규	남부산전	NB100K12C2T1	100	2	33,962
신규	코스텔	CEC-0530 BR/BC	50	1	22,154
신규	코스텔	CEC-1020 BR/BC	100	2	26,125
신규	피에스텍	EVQ-11S-050	50	1	18,620
신규	중앙제어	JC-6333	50	3	19,000
신규	클린일렉스	KL10-SD2	7	1	2,090
신규	시그넷시스템	HB7K-EV-BC1	7	2	2,375
신규	씨어스	CUS-200D	7	1	3,6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차량 중 기준가격 조정에 해당하는 53건 및 항공기(GULFSTREAM, GIV)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